

# 모태펀드 (중기부 소관) 2021년 2차 정시 출자사업 계획 공고

2021년도 모태펀드 2차 정시 출자사업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I. 개 요

### 1. 출자 규모 및 기본 조건

항 목	세 부 내 용	
출자 규모	· 총 3,055억원 내외	
투자 조건	·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창업자, 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에 대해 약정총액의 일정비율 이상을 주목적 투자대상에 투자 * 코넥스시장 제외 · 투자의 방법, 주목적 투자대상 및 비율 등 세부내용은 3. 출자분야 및 투자대상, 4. 주요출자 조건을 적용	
출 자 대 상	① 벤처투자조합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②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4조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③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9항 제1호 및 제249조의23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④ 개인투자조합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개인투자조합
운용사 선정방법	· 당사 홈페이지 공고 후, 접수된 제안서의 운용사, 운용전담팀, 조합 운용계획 등을 평가하여 선정	
접수마감 시한	· 2021년 3월 31일(수), 14:00 (온라인 방식으로만 접수)	
조합 결성 시한	· 결성시한 : 3개월 이내. · 부득이한 경우 3개월 이내에서 연장 가능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추가적으로 유예기간 부여 가능)	

## 2. 출자 분야별 출자 계획

(단위 : 억원)

분 야		출자예산 (변동가능)	결성 목표액	최대 출자비율 <sup>주1)</sup>	선정 운용사수	자조합별 최대출자액	신청가능 조합형태	
스마트 대한민국	바이오	200	500	40%	1개	200	벤처투자조합	
	그린뉴딜	300	750	40%	2개 내외	300		
소셜임팩트		100	167	60%	1개 내외	100		
여성기업		120	200	60%	1개 내외	120		
지역뉴딜 벤처펀드(모펀드) <sup>주2)</sup>		200	200	-	-	-		
글로벌펀드 <sup>주2)</sup>		300	300	-	-	-		
R&D매칭펀드 <sup>주2)</sup>		335	335	-	-	-		
창업 초기	벤처투자 조합	일반	200	333	60%	2개 내외	200	개인투자조합
		루키 <sup>주3)</sup>	200	333	60%	2개 내외	200	
		창업기획자 <sup>주4)</sup>	100	167	60%	2개 내외	50	
		소 계	500	833	60%	-	-	
	개인투자 조합	일반 <sup>주5)</sup>	140	233	60%	4개 내외	30	
		지역허브 <sup>주6)</sup>	60	100	60%	2개	30	
		소 계	200	333	60%	-	-	
소 계 <sup>주7)</sup>		1,000	1,466	-	-	-		
기술지주 <sup>주8)</sup>		100	167	60%	3개 내외	30		
M&A		400	1,000	40%	2개 이내	400	벤처투자조합, 산기술사업투자조합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투자집합기구	
합 계		3,055	5,085	-	-	-		

주1) '20년 출자사업에서 투자촉진 1안을 달성한 조합에 대해 모태펀드 출자비율 한도를 최대 10%p 이내에서 상향 가능하며, 출자심의회에서 최종결정

- 세부사항은 II.선정우대 및 선정배제 등 참조

주2) 지역뉴딜 벤처펀드, 글로벌펀드, R&D매칭펀드는 한국벤처투자가 직접 운용하며 세부계획은 추후 별도 안내

주3) 루키분야는 다음 ①~③ 중 하나 이상에 속하는 운용사가 대상

① 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 ② 등록(설립) 3년 이내인 창업투자회사,

③ 운용중인(해산총회 이전 존속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모든 투자기구의 약정총액이 400억원 미만인 창업투자회사

주4) 창업기획자 분야 신청가능 운용사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창업기획자에 한함

주5) 개인투자조합 신청가능 운용사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문개인투자자,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창업기획자 및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창조경제혁신센터에 한함

주6) 지역허브 분야 세부계획은 추후 별도 안내

주7) 창업초기 분야 출자금액 1,000억원 중 300억원에 대한 세부계획은 추후 별도 안내

주8) 기술지주 분야 신청가능 운용사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연구기관 첨단기술 지주회사에 한함

※ 심사 결과 적합한 운용사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출자하지 않을 수 있음

### 3. 출자 분야 및 투자 대상

분야		주목적 투자 대상										
스마트 대한민국	바이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진단·백신·치료제 등 의료용물질·의약품 및 의료기기 등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 사업을 영위하는 창업자, 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에 약정총액의 60% 이상 투자</li> <li>* 세부 반영범위는 규약협의를 결정</li> </ul>										
	그린뉴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음의 ① 또는 ②의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에 약정총액의 60% 이상 투자</li> <li>① 그린 스마트스쿨, 스마트 그린산단, 그린 리모델링, 그린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등 그린뉴딜 산업을 영위하는 창업자 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li> <li>* 세부 반영범위는 규약협의를 결정</li> <li>② 정부가 선정한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li> <li>* ②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 한국벤처투자가 투자심사를 운용사에 요청할 경우 운용사는 투자심사를 하여야 함. 단, 투자의 최종 의사결정은 운용사가 자율적으로 결정</li> </ul>										
소셜임팩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무적 성과와 사회문제 해결을 동시에 추구하면서 혁신성·성장성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인 소셜벤처기업에 약정총액의 60% 이상 투자</li> <li>* 운용사는 소셜벤처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와 투자 대상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판별표를 제안서에 명시하여야 함</li> <li>- 운용사가 소셜벤처기업 정의를 다음에 따라 제안</li> <li>① UN 지속가능개발(SDGs) 17개 목표 범위 내에서 운용사가 펀드 운용전략을 자율적으로 제안</li> </ul> <p>UN SDGs : '15.9월 유엔 총회(Summit)에서 설정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17개 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p> <p>빈곤, 기근, 보건, 교육, 성평등, 물위생, 청정에너지, 고용, 산업·혁신·인프라, 불평등 감소, 지속가능한 사회, 책임있는 소비·생산, 기후 변화, 수중 생태계, 육지 생태계, 평화·정의와 강한 협력, 목표 달성을 위한 협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② 순수 비영리 조직,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영위기업을 제외한 기업으로 사회문제 해결을 주목적으로 영위하는 기업</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caption>&lt; 소셜벤처의 사업 분야(예시) &gt;</caption> <thead> <tr> <th>구분</th> <th>사회통합</th> <th>사회문제(필요)</th> <th>공동체(공공)</th> <th>환경/생태</th> </tr> </thead> <tbody> <tr> <td>사업 분야</td> <td>① 취약계층 포용 ② 불평등 축소 ③ 저개발국가 원조, 협력 등</td> <td>① 교육/저출산 ② 건강과 웰빙 ③ 고용/일자리 ④ 주택/주거 ⑤ 문화 ⑥ 사회적 책임 이행(ESG) 등</td> <td>① 공공장소 활용 ② 공동체와 지역 발전 ③ 교통/수도/전기 등 공공서비스 등</td> <td>① 수질과 위생 ② 공해와 오염 개선 ③ 기후변화 ④ 청정에너지 등</td> </tr> </tbody> </table> <p>※ 주목적대상 적합 여부는 민간 자문단이 추가로 평가할 수 있음</p>	구분	사회통합	사회문제(필요)	공동체(공공)	환경/생태	사업 분야	① 취약계층 포용 ② 불평등 축소 ③ 저개발국가 원조, 협력 등	① 교육/저출산 ② 건강과 웰빙 ③ 고용/일자리 ④ 주택/주거 ⑤ 문화 ⑥ 사회적 책임 이행(ESG) 등	① 공공장소 활용 ② 공동체와 지역 발전 ③ 교통/수도/전기 등 공공서비스 등	① 수질과 위생 ② 공해와 오염 개선 ③ 기후변화 ④ 청정에너지 등
구분	사회통합	사회문제(필요)	공동체(공공)	환경/생태								
사업 분야	① 취약계층 포용 ② 불평등 축소 ③ 저개발국가 원조, 협력 등	① 교육/저출산 ② 건강과 웰빙 ③ 고용/일자리 ④ 주택/주거 ⑤ 문화 ⑥ 사회적 책임 이행(ESG) 등	① 공공장소 활용 ② 공동체와 지역 발전 ③ 교통/수도/전기 등 공공서비스 등	① 수질과 위생 ② 공해와 오염 개선 ③ 기후변화 ④ 청정에너지 등								
여성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음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는 창업·벤처기업에 약정총액의 60% 이상 투자하되, ①~②에 해당하는 기업에 약정총액의 30% 이상 투자</li> <li>① 여성이 최대주주인 기업</li> <li>② 여성이 당해 회사 대표권이 있는 임원으로 투자시점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등기되어 있는 경우</li> <li>③ 전체 임직원 중 여성 비율이 40% 이상인 경우</li> </ul>										

분야	주목적 투자 대상
창업초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창업자 중 업력 3년 이내 기업 또는 창업자로서 설립 후 연간 매출액이 20억원을 초과하지 않은 창업자, 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에 약정총액의 60% 이상 투자</li> <li>○ 상기 주목적 투자대상에 대해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이외 지역에 본점을 두고 있는 창업자, 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에 약정총액의 20% 이상 투자 (펀드결성일로부터 투자(납입)기간 내 동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포함)</li> </ul>
기술지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창업자 중 업력 3년 이내 기업 또는 창업자로서 설립 후 연간 매출액이 20억원을 초과하지 않은 창업자, 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에 약정총액의 60% 이상 투자</li> <li>○ 상기 주목적 투자대상에 대해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이외 지역에 본점을 두고 있는 창업자, 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에 약정총액의 20% 이상 투자 (펀드결성일로부터 투자(납입)기간 내 동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포함)</li> </ul>
M&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M&amp;A 및 Buyout 등을 위한 중소·벤처기업 인수를 위해 신주투자 또는 구주인수의 방법으로 약정총액의 60% 이상 투자. 단 다음 ①~④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함.</li> </ul> <div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단독 또는 전략적 투자자 등과 공동으로 ① 최대주주, ② 등기임원의 과반수 선임, ③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④ 투자한 투자기업이 중소벤처기업 등을 인수하여 상기 ①~③ 중 1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견기업에 대한 투자는 중소·중견기업 간 인수·합병하는 경우 약정총액의 40% 이내에서 가능</li> </ul>

#### 4. 주요 출자조건

항 목	내 용								
투자 방법	<p>가. 신규로 발행되는 주식 또는 지분의 인수. 다만,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규로 발행되는 주식의 인수는 제외</p> <p>나. 신규로 발행되는 무담보전환사채,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 무담보교환사채(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과 교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인수</p> <p>다.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의 체결</p> <p>* 주목적 투자대상 및 비율 등 세부내용은 3. 출자 분야 및 투자대상 참조</p>								
업무집행조합원 의무출자비율	<p>○ 조합 약정총액의 1% 이상, 단, 개인투자조합은 조합 약정총액의 5% 이상</p> <p>* Co-GP의 경우 합산하여 산정</p>								
자조합의 투자 의무	<p>○ 조합 약정총액에서 최소 투자의무비율(예시 : 60%) 이상을 주목적 투자 대상에 투자</p> <p>○ 다만, 모태펀드 출자사업에서 선정한 조합 규모보다 실제 결성 금액이 증가되어 상기 비율을 적용한 금액이 모태펀드 출자금액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모태펀드 출자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투자의무로 부여 가능</p>								
출자금 납입방식	<p>○ 일시납, 분할납(draw-down), 수시납(capital call) 중 선택 가능</p>								
투자(납입)기간	<p>○ 4년 이내로 운용사 자율제안</p>								
존속기간	<p>○ 5년 이상 운용사 자율제안</p> <p>- 단, 스마트대한민국(바이오) : 8년 이상</p>								
관리보수	<p>○ 모태펀드 자조합 기준규약에 따르되, 조합 결성규모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p> <p>○ 관리보수 지급기준</p> <p>- 결성일로부터 3년 내: 조합약정총액×결성규모 적용요율</p> <p>- 결성일로부터 3년 이후: 투자잔액(분기말 잔액)×결성규모 적용요율</p> <p>* 결성규모에 따른 적용요율:</p>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 출자금총액(출자약정액)이 300억원 이하의 경우, 2.5% 이하</p> <p>- 출자금총액(출자약정액)이 300억원 초과 600억원 이하의 경우, 2.3% 이하</p> <p>- 출자금총액(출자약정액)이 600억원 초과인 경우, 2.1% 이하</p> </div>								
기준수익률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기준수익률</th> <th style="text-align: center;">분야</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6% 이상</td> <td>스마트대한민국(바이오)</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3% 이상</td> <td>M&amp;A, 창업초기(벤처투자조합)</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 이상</td> <td>스마트대한민국(그린뉴딜), 소셜임팩트, 여성기업, 창업초기(개인투자조합), 기술지주</td> </tr> </tbody> </table> <p>* 모태펀드 출자지분에 대해 기준수익률 차등 적용 가능</p>	기준수익률	분야	6% 이상	스마트대한민국(바이오)	3% 이상	M&A, 창업초기(벤처투자조합)	1% 이상	스마트대한민국(그린뉴딜), 소셜임팩트, 여성기업, 창업초기(개인투자조합), 기술지주
기준수익률	분야								
6% 이상	스마트대한민국(바이오)								
3% 이상	M&A, 창업초기(벤처투자조합)								
1% 이상	스마트대한민국(그린뉴딜), 소셜임팩트, 여성기업, 창업초기(개인투자조합), 기술지주								
성과보수	<p>○ 기준수익률을 초과하는 수익의 20% 이내</p>								

항 목	내 용																						
<p><b>관리보수 및 성과보수 연동</b></p>	<p>○ 관리보수율 0.1%p 하향 시 성과보수 지급률을 2%p 연동하여 상향하도록 운용사가 관리보수 및 성과보수 체계를 선택하여 설계 가능</p> <p>- 관리보수율은 최대 0.5%p 하향 가능, 이 경우 성과보수 지급률은 최대 10%p 상향 가능 예시)</p> <table border="1" data-bbox="391 488 1409 712"> <thead> <tr> <th rowspan="2">제안서상 출자약정총액</th> <th colspan="2">조정 전</th> <th rowspan="2">조정</th> <th colspan="2">조정 후</th> </tr> <tr> <th>관리 보수율</th> <th>성과 보수율</th> <th>관리 보수율</th> <th>성과 보수율</th> </tr> </thead> <tbody> <tr> <td>300억원</td> <td>2.5%</td> <td>20%</td> <td>관리보수율 0.2%p 하향 → 성과보수율 4%p 상향</td> <td>2.3%</td> <td>24%</td> </tr> <tr> <td>500억원</td> <td>2.3%</td> <td>20%</td> <td>관리보수율 0.3%p 하향 → 성과보수율 6%p 상향</td> <td>2.0%</td> <td>26%</td> </tr> </tbody> </table>	제안서상 출자약정총액	조정 전		조정	조정 후		관리 보수율	성과 보수율	관리 보수율	성과 보수율	300억원	2.5%	20%	관리보수율 0.2%p 하향 → 성과보수율 4%p 상향	2.3%	24%	500억원	2.3%	20%	관리보수율 0.3%p 하향 → 성과보수율 6%p 상향	2.0%	26%
제안서상 출자약정총액	조정 전		조정	조정 후																			
	관리 보수율	성과 보수율		관리 보수율	성과 보수율																		
300억원	2.5%	20%	관리보수율 0.2%p 하향 → 성과보수율 4%p 상향	2.3%	24%																		
500억원	2.3%	20%	관리보수율 0.3%p 하향 → 성과보수율 6%p 상향	2.0%	26%																		
<p><b>수탁회사</b></p>	<p>○ 한국벤처투자가 수탁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지정하는 금융기관을 수탁회사로 선정하여 조합 자금을 관리하여야 함</p> <p>○ 조합의 미투자자산 중 일부는 수탁계약에 따라 은행, 증권회사의 확정금리부금융 상품에 운용 가능</p> <p>○ 조합재산의 관리는 수탁회사와 업무지시서를 통해서만 가능</p>																						
<p><b>회계감사인</b></p>	<p>○ 한국벤처투자에서 지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회계 감사인을 선정</p>																						
<p><b>전자보고시스템</b></p>	<p>○ 벤처투자통합정보시스템(VICS) 등 사용 의무</p>																						
<p><b>기 타</b></p>	<p>○ 운용사는 자펀드 투자기업의 고용 정보 및 그 증빙 자료를 주기적으로 제출하여야 함</p> <p>○ 해당 조합의 최대출자자가 모태펀드가 아닌 경우 타 출자자와 협의에 따라 상기와 다른 조건 적용 가능</p> <p>○ 개인투자조합 형태로 신청할 경우 다음 사항 적용</p> <p>① 법인의 경우 정관 상 사업목적에 다음 i), ii) 사항을 반드시 포함할 것</p> <p>i) 벤처기업이나 창업자에 대한 투자 또는 이에 투자하는 조합에 대한 출자*</p> <p>ii) 개인투자조합의 운용**</p> <p>* 정관에 사업목적이 미비된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한 실적 등의 증빙서류 필수 제출</p> <p>** 접수 마감일까지 미반영시 반드시 서면으로 불가피성을 소명한 후, 조합 결성일 전까지 반영하여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p> <p>② 한국벤처투자가 사무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지정하는 기관을 사무수탁회사로 선정하여 보고업무, 준법감시, 조합 및 투자자산 평가 등 업무를 의무화하며, 사무수탁에 관한 제반 비용은 개인투자조합의 비용으로 처리</p> <p>③ 기술지주회사 자회사 투자 시 사무수탁회사의 가치평가보고서 제출 필수(단, 외부투자 기관과 공동 투자시에는 면제)</p> <p>○ 기타 세부 출자조건은 선정된 업무집행조합원과 개별 협의</p>																						

## 5. 인센티브

항 목	내 용		
추가 성과보수	<p>○ 운용사는 다음 추가 성과보수를 제안할 수 있으며 출자심의회에서 최종 결정. 추가 성과보수는 다음 순서대로 적용하되 중복 적용되는 경우 운용사가 수령할 추가 성과보수의 한계는 모태펀드가 수령할 초과수익의 20%를 초과할 수 없음</p>		
	순서	적용조건	추가성과보수율
	고용창출	① 투자금 누계액 1억원당 2명 (1년 이상 고용된 내국인에 한함) 이상 고용창출 한 경우 ② ①의 조건을 청년(만 15세 ~ 39세) 고용으로 달성한 경우	① 모태펀드가 수령할 초과수익의 10% 이내 ② 모태펀드가 수령할 초과수익의 15% 이내
	신주보통주	신주보통주(상환조건을 제외한 방식의 우선주 포함) 투자실적이 전체 투자금액 대비 60% 이상일 경우	모태펀드가 수령할 초과수익의 10% 이내
	초기창업자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초기창업자 투자실적이 전체 투자금액 대비 50% 이상일 경우	모태펀드가 수령할 초과수익의 10% 이내 * 창업초기 분야 제외
	40대 창업 기업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초기창업자 중 대표이사가 40대 (만 40~49세)인 기업 투자실적이 전체 투자금액 대비 40% 이상일 경우	모태펀드가 수령할 초과수익의 10% 이내 * 창업초기 분야에만 적용
	지방투자	지방기업 투자실적이 전체 투자금액 대비 40% 이상일 경우	모태펀드가 수령할 초과수익의 10% 이내 * 창업초기 분야 제외
* 중복신청 가능(단 해당 투자가 주목적 투자대상에 해당되거나 관련법상 의무투자일 경우 적용하지 않음)			

## 6. 기타 사항

- 운용사별 최대 2개 조합 신청 가능
- 신청 현황에 따라서 모태출자 예산을 분할하여 다수 운용사를 선정할 수 있으며 심사 결과 적합한 운용사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출자하지 않을 수 있음
- 출자 대상 업무집행조합원은 제안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출자 대상 조합 등의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고 있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외국투자회사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0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자격 요건을 조합결성시점까지 충족하여야 함. 또한 외국투자회사가 결성하는 벤처투자조합은 국내에 소재하여야 하며 기준통화는 원화로 함
  - 유한(책임)회사를 신규 설립하여 조합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조합 결성 이전에 유한(책임)회사 설립을 전제로 제안서 제출이 가능. 단, 조합의 대표 펀드매니저 및 참여인력(이하 “운용인력”)은 유한(책임)회사의 사원\*이어야 하며 선정된 이후 해당 회사 설립 및 조합 결성이 제안서의 내용과 동일하여야 함
- \* 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출자좌수에 따라 지분을 가지는 자
- 개인투자조합 형태로 제안할 경우, 운용인력의 신규 채용을 전제로 제안서 제출 가능. 단, 조합 결성 이전에 채용하여야 하며 선정된 이후의 인력 구성은 제안서의 내용과 동일하여야 함
- 모든 출자대상은 소관법령 및 기준규약에서 요구하는 투자의 방법 등을 준수하여야 함
- '20년 선정조합 중 투자촉진 1안 또는 2안 신청사는 해당 투자실적을 증빙으로 제출하여야 함(첨부 양식 참조)

## II. 선정 우대 및 선정 배제 등

### 1. 선정 우대기준

#### (1) 1차 심사시 가점 부여

구분	상세내용
LP모집	일정기준 이상 출자자 참여가 확정된 경우 (출자확약서 또는 출자의향서를 통해 확인되는 경우)
지방투자	각 출자분야 주목적투자 대상으로 지방기업에 대한 투자를 약정총액의 30% 이상으로 제안하는 경우 * 해당투자가 주목적 투자대상이거나 관련법상 의무투자인 경우 우대하지 않음(예)창업초기, 기술지주 분야)
출자비율	모태펀드 최대출자비율보다 10%p 하향하여 제안하는 경우

#### (2) 벤처투자 촉진 확약(안) 적용안내

- 기한: '21년 1분기 모태펀드 출자사업(공고일 기준)
- 대상: '20년 선정조합 중 투자촉진 1·2안 및 Fast-Closing 선택 운용사
  - \* 근거 : 「위기를 기회로, 스타트업·벤처기업 지원방안 (제4차 비상경제회의, '20.4월)」
  - \* 투자촉진 1안 : '20년 조합결성 최소승인금액의 20%이상 투자
  - 투자촉진 2안 : 선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첫 번째 투자집행 완료
  - Fast-Closing : Fast-Closing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최소승인금액의 100%를 모집
- 내용: 벤처투자 촉진 확약에 대한 달성·실패에 따른 가감점을 적용
- 출자비율 상향: '투자촉진 1안'을 달성한 조합에 대해 제안분야 출자비율 한도를 최대 10%p 이내에서 상향하여 제안 가능하고 출자심의회에서 최종 결정
  - \* 예) 촉진 1안을 2개이상 조합에 복수로 신청하고, ① 모두 달성을 못한 경우 해당사항 없음, ② 하나만 달성한 경우 1개 분야 10%p 이내에서 신청가능, ③ 모두 달성한 경우 최대 2개 분야 각 10%p 이내에서 신청가능

## 2. 심의대상 제외 · 선정배제 · 선정보류 · 선정취소 등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조합의 성실한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의대상 제외, 선정 배제, 선정 보류 또는 선정 취소 등의 제재 가능

### (1) 심의대상 제외

-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1차 심의(서류) 종료일까지 심의대상 제외 가능

가. 제안서 양식에 위배되는 제안서

나. 소관법령에 따라 업무집행조합원 자격을 갖추지 못한 운용기관의 제안서

다.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지원분야의 오입력 포함)

라. 제안서를 제출한 운용기관이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심의 등 후속 업무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마. 기타 제안서 접수마감시한을 기준으로 조합운용에 필요한 일정수준의 요구 조건이 미비되어 심의 등 후속 업무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2) 선정 배제

-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1차 심의(서류) 종료일을 기준으로 적용

가. 업무집행조합원이 벤처투자자와 관련한 법률\*을 위반하여 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 등 관계당국으로부터 받은 시정명령·업무정지 처분과 관련하여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시정명령 처분을 받고 미이행 상태인 경우

-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업무정지 상태에 있는 경우

나. 업무집행조합원이 제안서 접수마감일 3년 전부터 1차 심의 종료일까지 벤처 투자와 관련한 법률을 위반하여 관계당국으로부터 경고·시정명령·업무정지를 합산하여 3회 이상 받은 경우

다. 업무집행조합원이 제안서 접수마감일 2년 전부터 1차 심의 종료일까지 규약을 위반하여 도덕적 해이, 불공정 계약 체결·이행\*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기소된 경우

\* '불공정 계약 체결·이행'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

- ① 매출 및 영업이익 등 경영 성과와 관련된 지표를 이유로 투자계약서에서 합의된 기간 전에 투자금을 조기 회수하는 행위
- ② 투자계약서에 합의된 투자금 조기회수 가능 사유로 인해 투자계약 만기전에 투자금을 회수하는 경우, 통보 후 최소 2개월 이상 투자업체에게 상환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지 않는 행위. 단, 투자업체와 합의할 경우 상환 준비기간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 ③ 국내 주식시장 상장 실패를 이유로 최초 계약시 정한 주식 가격을 30% 이상 조정하는 행위
- ④ 무담보전환사채 및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규 인수 방식으로 투자하면서 투자 대상을 사실상 프로젝트(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한 투자)로 한정하거나 프로젝트투자의 결과에 따라 투자 수익을 받는 형식으로 투자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
- ⑤ 투자기업의 이해관계인(창업자 내지 대표이사 또는 실질적 경영자인 대주주 등)에게 투자계약에 따라 투자기업이 지는 의무에 연대책임을 요구하는 행위. 단, 이해관계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투자기업 내지 조합의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하는 취지의 연대책임은 그렇지 아니함
- ⑥ 신주 보통주 투자 시, 기업 경영실적 또는 후속 투자유치를 조건으로 특별상환 청구권 (put-option)을 사용하는 행위

라. 개인투자조합은 업무집행조합원의 대주주가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에 해당하는 경우

마. 개인투자조합은 운용인력이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벤처 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 제2호 준용)

- 채무 변제일이 3개월 이상 초과한 채무가 1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
- 다른 벤처캐피탈 등\*의 최대주주 또는 임·직원

-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금융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금융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창업투자회사의 등록을 말소하기 전에 등록 취소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는 말소 당시의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 취소 사유를 통보받는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등록 말소일로 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또는 과거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창업투자회사의 취소 당시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벤처캐피탈 등\* 또는 벤처투자조합(또는 과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건전한 운영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면직 또는 해임된 임직원이 면직 또는 해임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벤처캐피탈 등 : 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LLC 및 기술지주회사, 신기술창업 전문회사, TIPS운용사, 창업기획자, 창조경제혁신센터, 전문개인투자자

○ 아래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안서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적용

가. 업무집행조합원의 자산건전성이 취약\*한 경우

- \*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인 경우로 제안서 접수마감일 직전 분기말 재무제표(가결산 포함, **미제출시 선정배제**) 기준으로 판정함. 단, 제안서 접수마감일까지 재무상태가 개선되어 선정배제요건이 해소된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재무제표 등을 추가로 제출 가능
- \*\* 재무제표의 인정범위: 감사보고서, 검토보고서,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발행(확인)하고 날인한 재무제표. 단, 상장사의 경우 가장 최근에 공시된 감사보고서, 검토(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
- \*\*\*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전문개인투자자인 경우 신용등급이 NICE평가정보 기준 과거 위험등급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할 경우 배제할 수 있음

나. 신청 자조합의 운용인력이 '벤처캐피탈 임직원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처분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일정기간은 의결일자로부터 다음 <표>의 기간까지임

처분	1회	2회 이상
경고	-	1년
감봉	1년	2년
직무정지	2년	5년
해임	5년	5년

\* 횟수는 의결일자 기준으로 최근 3년간 법령 위반 합산하여 산정, 경고 1회·감봉 1회는 감봉 2회로, 직무정지 1회·감봉 1회는 직무정지 2회로 산정함

다. 신청 자조합의 운용인력이 대표펀드매니저로서 참여한 모태 자조합의 투자의무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퇴직\*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모태 자조합의 관리보수가 삭감된 경우에 한함)

\* 퇴직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의 최초 상실일 기준

라. 신청 자조합의 운용인력이 대표펀드매니저로서 참여하고 있는 모태 자조합의 투자의무비율을 달성하지 못하고 재직 중인 상태로 유한(책임)회사의 신규 설립을 전제로 하여 신규 조합을 신청하는 경우

마. 신청사가 제출한 제안서 기준으로 기재된 운용인력이 업무집행조합원의 임직원으로 재직 중이지 않은 경우

\* 유한(책임)회사를 신규 설립하여 조합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제외

\*\* 신규 운용인력을 채용하여 개인투자조합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제외

바. 상법 상 유한(책임)회사가 사원이 아닌 운용인력을 포함하여 출자 신청한 경우

\* 사원은 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출자좌수에 따라 지분을 가지는 자를 의미함

사. 참여가 가능한 운용인력으로 신청 자조합 규모에 따라 대표펀드매니저 1명을 포함하여 다음의 최소 기준 인원 이상을 구성하지 못하는 경우

\* 대표펀드매니저는 창업투자회사 및 창업기획자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전문 인력이어야 함. 그 외 운용사의 경우 설립 근거법령에 따른 전문인력이어야 함

\*\* 개인투자조합의 대표펀드매니저는 벤처캐피탈 등의 투자경력<sup>1)</sup> 또는 기타 투자 경력<sup>2)</sup> 1년 이상인 자로 상근하는 운용 전담인력이어야 함.

- 1) 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LLC 및 기술지주회사, 신기술창업전문회사, TIPS운용사, 창업기획자, 창조경제혁신센터, 전문개인투자자의 투자경력
- 2) 민간기업, 대학 등에서의 투자업무 경력을 포괄적으로 인정

펀드 규모	최소기준 인원
300억원 이하	2명
300억원 초과 800억원 이하	3명
800억원 초과	4명

※ 참여 가능한 운용인력 기준은 별첨1 참고

- 아. 업무집행조합원이 업무집행조합원의 근거법령 상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자. 출자신청서 또는 제안서 작성내용 중 선정배제 항목에 대한 사항이 허위사실 기재로 확인된 경우

### (3) 선정 보류

- 가. 조합운용과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재심의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나. 운용사의 최대주주 또는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운용사의 발행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한 자가 형사상 피소되어 운용사의 안정적 운영 및 자조합의 성실한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다. 업무집행조합원이 불공정 계약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정부기관 등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

### (4) 선정 취소

- 가. 출자심의회에서 결정한 자조합의 최소 결성 규모에 미달하는 경우
- 나. 출자심의회가 결정한 출자조건을 업무집행조합원이 수용하지 않아 규약 협의 등 후속업무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 다. 제안서 또는 구술 내용 등에 중요한 사실의 허위 또는 은폐가 있는 경우
- 라. 운용인력이 결성일 이전까지 겸직(조합의 업무 수행 이외에 타 법인으로부터 정기적인 급여를 지급받거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을 해소하지 못한 경우.
- 마. 선정 후 결성 총회까지 아래의 사유가 발생하여, 심의 당시 자조합 운용여건과 현저히 달라졌다고 판단되는 경우 출자심의회를 통해 선정 취소 여부를 결정

- 최대주주 또는 대표 펀드매니저의 변동
- 자조합에 참여하는 운용인력이 과반을 초과하여 변동되는 경우
- 기타 자조합의 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바. 선정 배제에 해당하는 사유가 1차 심의 후 확인 또는 발생된 경우

사. 설립을 전제로 선정된 유한(책임)회사가 선정된 이후 조합의 대표펀드매니저 및 운용인력 또는 해당 회사 설립 및 조합결성이 제안서의 내용과 동일하지 않은 경우

아. 신규 운용인력 채용을 전제로 선정된 개인투자조합이 선정된 이후 인력 구성이 제안서의 내용과 동일하지 않은 경우

자. 스마트대한민국(멘토기업 매칭출자) 분야의 경우, 선정된 멘토기업의 출자가 취소되거나 출자금액이 감액되는 경우(증액은 허용)

### 3. 제재 사항

- 결성시한 연장에도 불구하고 시한 내 조합결성을 완료하지 못한 업무집행조합원 및 선정이 취소된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해서는 각각 연장된 결성 시한일 및 선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간 출자 제한이 가능하며, 해당 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복수인 경우에는 책임 소재에 따라 출자 제한 여부를 각각 달리 적용 가능
  - \* 업무집행조합원이 유한(책임)회사인 경우, 그 유한(책임)회사의 운용인력은 결성 시한 및 선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간 출자사업의 운용인력 자격으로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 \*\* 결성시한을 연장하지 않은 경우로 업무집행조합원이 선정 취소조건 중 가. 결성규모 미달인 경우 및 나. 출자조건 수용거부인 경우에 해당될 경우 본 제재 사항을 적용하지 않음
  - \*\*\* 특정 출자분야의 경우 공고 조건에 따라 출자 제한 면제할 수 있음
- 자조합이 만기해산일(해산총회일 기준)까지 규약 상 투자 의무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하여 당해 자조합의 해산일로부터 1년 동안 모태조합 출자 제한 가능
- 선정 조합 중 출자확약서 등(LOC, LOI) 제출로 인해 우대를 받았으나 실제 출자 금액이 선정시 우대받았던 기준에 미달하거나 출자 기관이 달라진 경우 조합 결성일로부터 6개월간 출자 제한
- 상기 제재사항은 한국벤처투자가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운영하는 모든 모펀드의 출자사업에 동일하게 적용

### Ⅲ. 선정 절차 및 일정

- 선정 절차: 공고 → 제안서 접수 → 1차 심의(서류 심사 및 현장 실사) → 2차 심의(운용사 제안서 PT) → 최종 선정

\* 소셜임팩트 주목적대상 적합 여부는 민간 자문단이 추가로 평가할 수 있음

(예 : 해당분야 신청 운용사는 1차 심의와 2차 심의 사이에 전문가 자문단에게 투자분야에 대한 PT 후 자문단의 의견을 수렴하여 2차 심의 이전에 투자분야를 수정할 수 있음)

- 선정 일정 (세부 일정은 분야별 또는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구분	일 정	내 용	비 고
접수	'21. 3. 24.(수) 10:00부터 '21. 3. 31.(수) 14:00까지	제안서 접수 (온라인)	-
선정	'21. 5월	최종 선정결과 발표	홈페이지 게재
결성	최종 선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조합 결성 완료	-

### Ⅳ. 지원 방법 및 출자 설명회

구분	내용
지원방법	온라인 신청 매뉴얼(붙임5. 참조)에 따라 벤처투자 종합정보시스템(아래 주소)을 통한 신청 정보 및 제출 서류 등록(붙임4. 참조) * 온라인 접수로 별도의 서류제출 없음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text-align: center; padding: 5px;"><a href="http://install.kvic.or.kr">http://install.kvic.or.kr</a></div>
출자 설명회(안)	- 일 시 : 2021.3.10.(수) 한국벤처투자 홈페이지 온라인 설명회 게시(예정)

\* 상기 일정은 특이사항 발생시 사전 안내하고 변경될 수 있음

## V. 기 타

- 제안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중대한 오류 등의 허위 사실 기재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선정 이후에도 선정을 취소함
- 멘토기업 매칭출자 분야의 경우 채용 소진시까지 매월 7일 수시접수로 진행하며, 제안서 접수 전 한국벤처투자에 사전협의 필요
  - \* 주목적 투자대상 및 출자비율 등 세부내용은 2021년 1차 정시 출자사업 공고 참조
  - \*\* 해당분야 신청시, 가장 최근의 출자사업 제안서 양식을 사용할 것(한국모태펀드 2021년 2차 정시 출자사업 계획 공고)

## VI. 문의 방법

- 스마트대한민국, M&A : 02-2156-2070, fof@kvic.or.kr
- 소셜임팩트, 여성기업, 창업초기 : 02-2156-2163, fof@kvic.or.kr
- 개인투자조합, 기술지주 : 02-2156-2033, angelfof@kvic.or.kr
- 온라인 접수 관련 문의: 02-2156-2479, datacenter@kvic.or.kr

2021. 2. 24.

한국벤처투자 대표이사

## <별첨 1> 참여가 가능한 운용인력 기준

### [ 벤처투자조합 ]

□ 신청 자조합의 각 운용인력(대표펀드매니저 및 참여인력)이 투자의무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투자조합(벤처투자조합, 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개인투자조합)의 핵심인력으로 이미 참여하고 있는 경우, 각 인력별로 투자의무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투자조합과 신청 자조합을 합산한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인력은 핵심인력으로 참여 불가

\* 투자의무비율 :

- 규약(정관)상 정하는 투자의무비율
- 규약(정관)상 정하는 투자의무비율이 없는 경우, 약정총액의 60%

1. 신청 자조합의 대표펀드매니저가 대표펀드매니저로서 운용중인 투자조합의 수가 신청 자조합을 포함하여 4개를 초과하거나, 약정액의 합이 5,000억원 이상인 경우. 단, 신청 자조합의 규모가 5,000억원 이상인 경우(운용 중인 투자조합이 없는 경우에 한함)는 예외로 함

#### <대표펀드매니저의 투자조합 운용 한도>

- 신청 자조합을 포함하여 대표펀드매니저로서 운용중인 펀드수의 합 ≤ 4
- 신청 자조합을 포함하여 대표펀드매니저로서 운용중인 펀드규모의 합 < 5,000억원

2. 신청 자조합의 참여인력이 참여인력으로 운용중인 투자조합의 약정액 (신청 자조합 포함)을 각 투자조합 참여인력수로 나눈 금액의 합이 5,000억원 이상인 경우

#### <대표펀드매니저를 제외한 핵심인력의 개인별 투자조합 운용금액 한도>

$$\sum(\text{각 펀드규모} \div \text{대표펀드매니저를 제외한 핵심인력 수}) < 5,000\text{억원}$$

3. 대표펀드매니저가 복수인 경우 운용 조합 규모 산정

- 신청조합 또는 기존조합의 대표펀드매니저가 복수인 경우, 조합 규모에 대표펀드매니저 수로 나눈 금액을 각 대표펀드매니저의 운용금액으로 계산하여 적용
- 단, 운용 조합 수는 나누어 적용하지 않음

#### <대표펀드매니저의 투자조합 운용 한도>

- 신청 자조합을 포함하여 대표펀드매니저로서 운용중인 펀드수의 합 ≤ 4
- 신청 자조합을 포함하여 대표펀드매니저로서 운용중인 펀드규모의 합 < 5,000억원

## [ 개인투자조합 ]

- 신청 자조합의 대표펀드매니저가 투자 의무비를 달성하지 못한 개인투자조합의 대표펀드매니저로 이미 참여하고 있는 경우, 투자 의무비를 달성하지 못한 개인투자조합과 신청 자조합을 합산한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인력은 대표펀드매니저로 참여 불가

\* 투자 의무비 :

- 규약(정관)상 정하는 투자 의무비
- 규약(정관)상 정하는 투자 의무비가 없는 경우, 약정총액의 60%

1. 신청 자조합의 대표펀드매니저가 대표펀드매니저로서 운용 중인 개인투자조합의 수가 신청 자조합을 포함하여 5개를 초과하거나, 약정액의 합이 500억원 이상인 경우. 단, 신청 자조합의 규모가 500억원 이상인 경우(운용 중인 투자조합이 없는 경우에 한함)는 예외로 함

### <대표펀드매니저의 투자조합 운용 한도>

- 신청 자조합을 포함하여 대표펀드매니저로서 운용 중인 펀드수의 합  $\leq 5$
- 신청 자조합을 포함하여 대표펀드매니저로서 운용 중인 펀드규모의 합 < 500억원

2. 대표펀드매니저가 복수인 경우 운용 조합 규모 산정

- 신청조합 또는 기존조합의 대표펀드매니저가 복수인 경우, 조합 규모에 대표펀드매니저 수로 나눈 금액을 각 대표펀드매니저의 운용금액으로 계산하여 적용
- 단, 운용 조합 수는 나누어 적용하지 않음

### <대표펀드매니저의 투자조합 운용 한도>

- 신청 자조합을 포함하여 대표펀드매니저로서 운용 중인 펀드수의 합  $\leq 5$
- 신청 자조합을 포함하여 대표펀드매니저로서 운용 중인 펀드규모의 합 < 500억원

## 〈별첨 2〉

### 1차 심의 중 서류심사 평가항목

분류	주요 평가항목
펀드 결성 능력	펀드 결성기간, 결성 후 투자집행 기간 등
투자집행 역량	운용사 투자역량, 투자 집중도 등
사후관리 역량	모태 자조합의 사후관리 수준 등
수익률	청산조합 수익배수, 모태 자조합 평가 수익배수 등
기타	운용사 인력 이탈률, 펀드 운용 중 중도 이직 등
가점 등	공고문의 선정 우대기준 참조 등

\* 개인투자조합 평가항목 : 조합 운용 안정성, 투자역량, 후속투자 유치, 사후관리 수준, 수익률, 보육역량, 가점 등

### 2차 심의 평가항목

분류	주요 평가항목
펀드 결성 능력	결성 가능성 등
운용전략	투자 전략 및 계획, 경험 수준 등
운용사	투자 실적 및 자원, 집중도 등
운용인력	인력 구성 및 실적, 책임운용 등
기타	조합 및 피투자 기업 관리 등

\* 개인투자조합 평가항목 : 펀드 결성 능력, 운용역량, 사후관리 수준, 수익률, 액셀러레이팅 등